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0년도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 신청요강

2010. 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주요사항 신규대비표

구분	2009년	2010년	비고
1. 지원예산	총 예산 : 2,000백만원(71과제)	총 예산 : 2,000백만원(67과제 내외)	
2. 지원분야	-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어 강의 개설이 필요하나,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 채용을 통한 강의개설이 곤란한 분야 -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목으로 설정(예정)되어 있으면서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 - 대학(교) 및 대학원 개설강의만 인정	좌 동	
3. 지원규모 (연/과제당)	- 연 2,800만원 - 강의지원비 : 2,600만원 - 강의기관지원비 : 200만원	- 연 28,000원(38,000만원) - 강의지원비 : 2,600만원 - 강의기관지원비 : 200만원 - OCW연계비 : 1,000만원(단, OCW는 10개과제 내외 지원)	
4. 지원기간	1년	좌 동	
5. 신청자격	보호학문분야에 적합한 시간강사	좌 동	
6. 심사절차	- 요건심사→적부심사→전공심사(패널)→종합심사 ※ 강의개설 과목-전공 간 연계성 등 적부심사 강화	요건심사→전공심사(온라인+PM리뷰)→종합심사	
7.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안내 : 2월 - 신청접수 : 3월 - 심사(요건/전공/종합) : 4월~6월 - 선정 및 지원 : 7월(연구개시 : 9.1)	- 사업공고 및 안내 : 1월 - 연구자 신청: 2010.3.10.(수)~3.17.(수) - 기관 확인: 2010.3.18.(목)~3.19.(금) - 심사(요건/전공/종합) : 4월~5월 - 선정 및 지원 : 6월(연구개시 : 7.1)	



차 례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사업목적	1
■ 지원방향	1
II. 지원 내용	
■ 지원예산	1
■ 지원대상 및 지원 유형	2
■ 지원규모 및 지원 기간	2
III. 신청방법	
■ 신청자격	3
■ 신청기간	3
■ 신청방법	3
■ 신청절차	3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4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4
IV. 심사 및 선정	
■ 심사단계	6
■ 심사절차 및 내용	6
■ 선정 및 협약체결	7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연구비지급	7
■ 간접비 지급방안	7
VI. 연구과제 사후관리	
■ 연구진행 상황보고	7
■ 연구결과보고	8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9
■ 연구결과보고 및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제	9
■ 연구성과 관리	10
VII. 기타사항	10
[붙임 1] 심사항목 및 배점	12
[붙임 2] 강의·연구계획 추천서 양식	13
[붙임 3] 강의·연구계획서 양식	14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사업목적

- 학문 종의 다양성 보호 및 학문 분야 간 균형 발전 도모
- 소외학문, 희귀학문 분야의 연구지속성 담보 및 대학 교육내용의 균형성 유지
-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유도를 통한 소외학문의 전파력 증대

● 지원방향

- 학문 종의 다양성 보호와 보호학문분야의 적격 여부 선정강화를 통한 소외학문 및 희귀학문 분야에 대한 배려
- 보호학문 분야의 강의와 연구의 연계성 강화
- 온라인 강의 콘텐츠개발 추진 지원(OCW 연계)

II.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지원비: 총 2,000백만원 (67과제 내외)

사업명	지원 유형 (단독/공동)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비 고
보호학문 분야 강의지원 사업	단독	연 28백만원(연 38백만원) · 26백만원(강의지원비) · 2백만원(강의기관지원비) · 10백만원(OCW연계비 - 10개 과제 내외 지원)	1년	

※ 강의기관지원비는 연구자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 종 보험(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인정됨

※ OCW연계에 지원하여 선정될 경우 10백만원의 제작비용 추가지원(KERIS에서 지정된 콘텐츠제작업체에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 유형

- 지원분야
 -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어 강의 개설이 필요하나,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 채용을 통한 강의개설이 곤란한 분야
 -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목으로 설정(예정)되어 있으면서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
 - ※ 대학(교) 및 대학원 개설강의만 인정
- 지원대상 : 보호학문분야에 적합한 시간강사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 : 강의 및 단독연구

● 지원규모 및 지원 기간

지원 세부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 과제수(예정)	비 고
강의 지원비	26백만원	1년	67개 과제 내외 (단, OCW는 10개 과제 내외 지원)	매월 분할 지급
강의기관 지원비	2백만원			
OCW 연계비	10백만원			컨텐츠제작업체 지급
계	28백만원(38백만원)			

※ 강의기관 지원비는 연구자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인정됨

Ⅲ. 신청방법

●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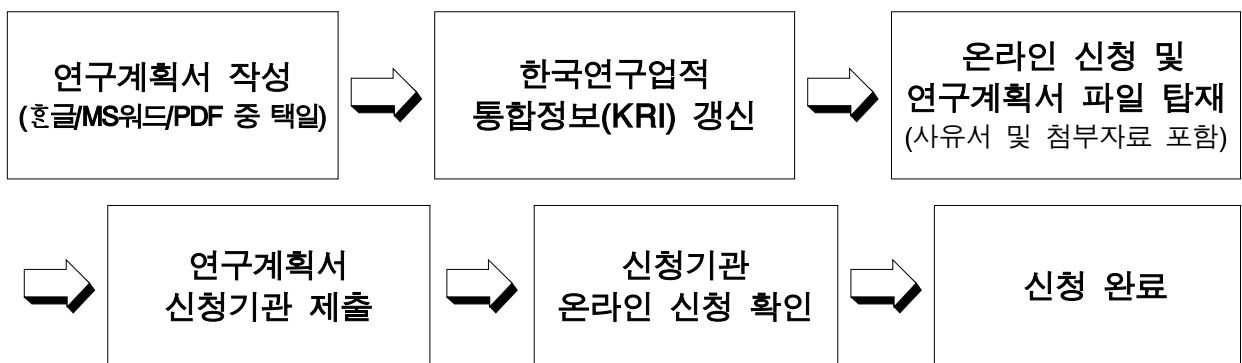
- 보호학문분야의 강의를 해당 대학(교)의 2010년 2학기에 확정(예정)된 시간강사
 - ※ 전임교원 제외
 - ※ 대우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단, 시간강사와 여건이 동일할 경우 추천자의 확인으로 신청가능
 - ※ 전일제(full-time)취업자는 제외
 - ※ 해당 대학교에서 규정하는 신청 수강생 수 이하가 신청될 경우에도 폐강해서는 안됨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2010. 3. 10(수) ~ 3. 17(수), 18:00까지
- 기관 확인: 2010. 3. 18(목) ~ 3. 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절차)



- ※ 온라인 신청전 재단 홈페이지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완료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고 개인 정보를 변경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 세부 온라인 신청요령은 온라인 신청기간 1개월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해 5년간 참여 제한
 - ※ 2009년 이전 선정 과제의 경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를 제한
- 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 (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제한
 -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 동 사업에는 신청 제한되며, 공동연구원으로 2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기존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지원 과제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1.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기초연구-우수논문사후지원), 기반연구(사회과학지정주제-연구자 네트워크), 기반연구(G20국가 모니터링단 시범사업),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학진흥사업 중 인문주간 및 강좌 지원의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
- *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IV. 심사 및 선정

● 심사단계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 고
1 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연구재단
2 단계	전공심사	온라인심사	보호학문분야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적부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PM Review	온라인 심사 결과 검토 의견 제출	PM
3 단계	종합심사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	종합심사단

● 심사절차 및 내용

1) 요건심사

- 심사방법: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2) 전공심사

- 심사방법: 전문가 집중심사(온라인전문심사 + PM Review)
 - 온라인 전문심사: 온라인 전문가 개별 심사(심사자별 절대 평가)
 - PM Review: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심사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및 검토하는 제도, 심사자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 심사내용: 보호학문분야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3) 종합심사

- 심사 주관: 종합심사단
- 심사 내용: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창의·도전·소외분야 과제 선정 포함),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 평가결과 최종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등을 검증
- 최종선정: 예비선정 기간 중 검증결과에 따라 최종선정을 확정
-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연구자, 주관연구기관(장)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 지급시기: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함

● 간접비 지급방안: 간접비 없음

VI. 연구과제 사후관리

● 연구진행 상황보고

- 연구 착수 보고서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연구진행 상황보고서
 - 2010년 2학기 강의결과보고서
 - 2011년 1학기 강의개설 확인서

- ※ 온라인 강의 개설(계절학기 포함)도 포함
- ※ 온라인 강좌 개설시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총 2개 학기를 개설할 경우 강의 개설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함
- ※ 강의계획 변경
 - 당초의 강의제목(강의명), 강의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사전(강의개시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기관지원비 수령기관은 증빙자료
 - ※ 기관지원비 증빙은 해당 대학(교)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여 연구자에게 PDF 파일형식으로 전달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를 활용하여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개인회원 보험정보 조회는 공인인증서 필수)
- 연구진행 상황보고서 미제출자: 연구비 집행중단 및 회수 처리

● 연구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 보고내용
 -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원문파일 탑재)
 - 연구요약문(국·영문)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 연구비 중앙관리 부에서 입력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 보고방법 : 온라인 제출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의 Working paper 형태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함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2010년에 지원된 연구는 연구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공개함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시기: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온라인 제출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A&HCI, SSCI, SCI(E), SCOPUS)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함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 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551-과제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551-과제번호).”

● 연구결과보고 및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 및 최종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처리규정」 제29조 2항 및 제31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연구결과보고 미이행 :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환수일로부터 2년간 연구지원 신청제한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미이행 :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 제한. 단, 제한 기간 중 결과물 제출 시 제한 해제

● 연구성과관리

- 연구성과 Follow-up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VII. 기타사항

1.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2.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 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go.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김용숙, 최은정 : 042-869-6207, 6308

○ 전공심사 관련 문의

- 어문학단 : 042-869-6391 ~ 3
- 역사철학단 : 042-869-6245 ~ 6
- 법정상경단 : 042-869-6301 ~ 2
- 사회과학단 : 042-869-6083 ~ 5
- 문화융복합단: 042-869-6136 ~ 8, (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042-869-6114

【붙임 1. 심사항목 및 배점】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강의 내용 (60)	강의개설의 필요성 (30)	▪ 희귀분야로서 강좌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가	
	강의계획서 평가 (20)	▪ 강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가	
		▪ 강의와 연구가 연관되어 있는가	
	온라인 강의 계획평가 (10)	▪ 해당 분야의 온라인 강의 전달 방법이 적절한가 ▪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방법의 적절성	
연구 주제 (20)	독창성 (10)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	
		▪ 독창적인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을 시도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10)	▪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큰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의 지평을 창출하는가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 연구 결과가 교육내용으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연구내용 및 실현 가능성 (20)	연구내용 및 방법 (10)	▪ 연구 내용 및 방법은 적절한가	
	선행연구 (10)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 되었는가 ▪ 인용 및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 보호학문의 적격 통과(pass) 과제에 한하여 실시함

※ 온라인 강의 계획이 없는 과제의 경우 강의계획서 평가 항목 배점이 30점으로 조정

【붙임 2. 강의·연구계획 추천서】

2010년도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강의 · 연구계획 추천서

(학과장 추천서)

강좌명	2010년 2학기 강좌명 : 2011년 1학기 강좌명 :					
강의내용	강의기관	대학(교)				학과 (학과장 :)
		전화 : ()		FAX : ()		
	강의학점		주당 강의시간		강의과목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연구과제명						
신청자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상기 신청자는 해당 보호학문분야에 있어서 연구의욕이 왕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열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귀 재단의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적격자로 추천하며, 상기 연구자가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에 선정될 경우 1년간 해당 강의를 배정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 . . 대학(교) 학과 학과장 성명 : (인)						

※ 추천인은 신청자가 강의와 연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해야 함 (전일제 (full-time) 취업자 제외)

【붙임 3. 강의·연구계획서】

2010년도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강의·연구계획서

강좌명	2010년도 2학기 강좌명 : 2011년도 1학기 강좌명 :					
강의내용	강의학점		주당 강의시간		강의과목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연구과제명						

※ 2011년 1학기 강좌배정은 강좌명이 변경가능하나 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시 개설했
정 되어야 함

I.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1. 최종 학위논문

논문제목	
학 위 구 분	석사 (), 박사 (), 기타()

*기타란은 “특이한 기술”, “과정수료”등의 사실을 기입 하십시오

-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은 재단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반드시
본인이 입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II. 연구 및 강의실적

1. 연구실적

- 연구실적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온라인 신청 마감일 전에 반드시 본인이 입력·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강의실적

강좌명	강의기관	기간	학점	주당 강의시간	수강 인원	과목 구분	비고

※ 과목구분은 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중 택일하여 기재

※ 최근 3년간에 강의 실적만 기재 함 (2007년 1학기부터)

III. 강의 계획

※ 2010년2학기과 2011년1학기 강좌가 다를 경우에는 2개 학기의 강의계획을 작성함

※ 각 항목별로 작성하십시오.

● 강 좌 명 :

- 1) 강좌개설의 목적
(보호학문으로서의 필요성)
- 2) 강좌 관련 분야의 국내외 동향
- 3) 강좌 내용 및 방법
- 4)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 계획

IV. 연구계획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IV.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학문발전 공헌도, 활용방안 등으로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참고문헌 목록,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구업적 요약문 제외)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합니다.

V. 연구추진계획

년 월		연구수행내용	비고
2010.	7		
	8		
	9		
	10		
	11		
	12		
2011	1		
	2		
	3		
	4		
	5		
	6		

※ 신청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